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52286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389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522861 판결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6. 3. 23.

판결 선고 2016. 5.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147,411원 및 그 중 1,491,222,391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147,411원 및 그 중 1,491,222,391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3. 11.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4. 7. 9. 체결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31. 작성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0. 6. 29.	450,000,000원	2011. 6. 29.	중소기업은행	500,000,000원
1-1 (변경)2011. 6. 29.	2012. 6. 29.				
1-2 (변경)2012. 6. 29.	2013. 6. 28.				
1-3 (변경)2013. 6. 25.	2014. 6. 27.				
1-4 (변경)2014. 6. 27.	2015. 6. 26.				
2	2010. 6. 29.	270,000,000원	2011. 6. 29.	중소기업은행	300,000,000원
2-1 (변경)2011. 6. 29.	2012. 6. 29.				
2-2 (변경)2012. 6. 29.	2013. 6. 28.				
2-3 (변경)2013. 6. 25.	2014. 6. 27.				
2-4 (변경)2014. 6. 27.	2015. 6. 26.				
3	2012. 9. 4.	765,000,000원	2013. 9. 4.	중소기업은행	900,000,000원
3-1 (변경)2013. 9. 3.	2014. 9. 4.				

3)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A와 피고 B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피고 A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2)항 표 기재와 같은 대출(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4. 8. 7. 대출이자 지급의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9. 12.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453,937,931원(= 원금 450,000,000원 + 이자 3,937,931원),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72,003,326원(= 원금 270,000,000원 + 이자 2,003,326원),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770,757,934원(= 원금 765,000,000원 + 이자 5,757,93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중 5,476,800원을 회수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 이후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6,923,220원을 지출하였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B은 2013. 11.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1. 11. 접수 제7898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고, 2014. 7.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527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1)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8. 29.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각 지분은 2015. 5. 6. 일괄매각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7. 31.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 475,047,2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 5,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의 대출이자 지급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147,411원(= 대위변제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 1,491,222,391원 + 대위변제금 중 회수된 5,476,800원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1,800원 + 법적 절차 비용 6,923,220원) 및 그 중 회수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 1,491,222,3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 B은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로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 피고 C는 피고 A에게 신규로 추가대출을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을다 제4호증의 3, 4의 기재, 이 법원의 2015. 10. 8.자 안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2013. 11. 11. 및 2014. 7. 14.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 A는 2013. 12. 31. 부채가 3,732,247,748원인데 그 중 단기차입금이 3,131,189,589원에 이르고,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이 2,017,840,000원에 이름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6,826,783원에 그치는 등(2014. 12. 31.에는 피고 A의 매출채권은 660,238,000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90,301원이며 미수금이 1,821,277,790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였다.

③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2015. 4. 28.자 안산시 상록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5, 6, 10호증, 을다 제7, 8, 9호증의 각 1, 2, 을다 제11, 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피고 C에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 A에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B은 2005.경 피고 A를 운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피고 A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A의 지분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 B의 개인 자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피고 C의 자금을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A에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매출이 생기면 변제하여 왔고, 2011년부터는 피고 B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A와 피고 C가 직접 자금을 융통하였다.

② 피고 C는 피고 A와 직접 자금거래를 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년까지 피고 A와 금원을 주고 받은 내역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인하고 있고,

2011	478,000,000원	258,000,000원	220,000,000원
2012	1,485,000,000원	1,175,000,000원	310,000,000원
2013	1,213,000,000원	1,154,270,000원	58,730,000원
2014	466,000,000원	24,140,000원	441,860,000원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는 피고 C에 대하여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적어도 530,000,000원(= 위 2011년도 잔여 대여금 220,000,000원 + 위 2012년도 잔여 대여금 310,000,000원)의, ㉡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적어도 588,730,000원(= 위 530,000,000원 + 위 2013년도 잔여 대여금 58,73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11. 7. 무렵부터의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1	2013. 11. 1.	110,000,000	
2	2013. 11. 5.		20,000,000

1	2013. 11. 1.	110,000,000	
3	2013. 12. 2.		270,000,000
4	2013. 12. 2.		40,000,000
5	2013. 12. 5.	10,000,000	
6	2013. 12. 6.		110,000,000
7	2013. 12. 10.	170,000,000	
8	2013. 12. 16.	10,000,000	
9	2013. 12. 19.	150,000,000	
10	2013. 12. 31.		150,000,000
11	2013. 12. 31.	100,000,000	
12	2014. 1. 2.	100,000,000	
13	2014. 1. 2.	150,000,000	
14	2014. 2. 8.	200,000,000	
15	2014. 5. 30.	13,500,000	
16	2014. 6. 2.	2,500,000	
합계	1,016,000,000	590,000,000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피고 C가 피고 A에 추가로 대여한 금원은 합계 1,016,000,000원에 이르고 수시로 변제한 합계 59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신규자금의 규모는 합계 426,000,000원(= 위 1,016,000,000원 - 위 590,000,000원)에 이른다(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00,000,000원이다).

③ 피고 A는 피고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직원 급여,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을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추가로 체결되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근저당권자, 채무자가 같고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피고 B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모두 피고 A의 자금유통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과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사이에 약 8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그 사이 신규자금의 유통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사건 보증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의 공유대상인 각 부동산은 근접하여 위치하고 현재 함께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이 일괄하여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성을 일괄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 A에게 합계 1,016,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590,000,000원을 변제받아 그 잔존 대여금이 차액 426,00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진영현

판사여인지

별지